

간이과세 [] 포기 [] 적용 [] 신고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인적사항	상호(법인명)	등록번호	
	성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사업장(주된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신고내용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4항 또는 제116조제2항에 따라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	신규 사업자	사업시설착수 연월일 또는 사업 개시 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연간공급대가 예상액
	기존 사업자	간이과세를 포기한 과세기간 개시연월일	간이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부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
[] 간이과세 포기신고	「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의 포기를 신고합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	년 제 기(. . .부터)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해당되는 신고사항에 [√]표시하고 해당 사항을 적은 후 작성일과 신고인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합니다.

